

의안번호	2212087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8.
추계번호	25A4369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－ 1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목표 － 3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과	재량규정
3	안 제16조(선도사업에 대한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－ 2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·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	재량규정
4	안 제19조(산업디지털 인공지능 혁신센터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·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인공지능 혁신센터(이하 “혁신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20조(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·장비·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·서비스(이하 “기술등”이라 한다)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1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 - 3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직무 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- 4.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	
7	안 제22조(금융 및 세제 지원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23조(국제협력 등)	○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, 외국의 정부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24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·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(이하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”이라 한다)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26조(전담기관의 지정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·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)	
3	안 제16조(선도사업에 대한 지원)	
4	안 제19조(산업디지털인공지능 혁신센터)	
5	안 제20조(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)	
6	안 제21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	
7	안 제22조(금융 및 세제지원 등)	
8	안 제23조(국제협력 등)	
9	안 제24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·지원)	
10	안 제26조(전담기관의 지정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관련 종합계획 수립·시행, 전문회사,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을 포괄적으로 법률에 반영함에 따라 현행 법 제명을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으로 개정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은 재량지출 성격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·확정으로 그 지출 규모가 정해지므로 현시점에서 현

행 사업의 확대 규모 또는 신규 사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(인공지능 기술 활용 일부 포함)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(단위: 백만원)

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추경
안 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)	산업디지털전환확산 지원체계구축(산업DX 정책 지원)	—	160	148	140
안 제1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)					
안 제19조(산업디지털인공지능 혁신센터)	산업디지털전환확산 지원체계구축(DX실행모 델 개발·적용)	1,000	1,250	800	770
	산업디지털전환확산 지원체계구축(융합얼라이 언스 구축·운영)	500	1,500	1,500	1,305
	산업디지털전환확산 지원체계구축(산업DX 지원 플랫폼)	1,000	400	400	348
안 제20조(기술·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)	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 기술개발(R&D)(산업 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 기술개발)	—	—	—	3,200
	제조데이터표준·인공지능 활용제품전주기탄소중립 지원기술개발(R&D)(제조 데이터표준·인공지능활용 제품전주기탄소중립지원 기술개발)	—	—	—	3,500
	DX한걸음프로젝트(R&D) (DX한걸음프로젝트)	4,875	8,375	455	—

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추경
	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 육성(R&D)(산업지능화선 도밸류체인육성)	9,820	9,820	—	—
	전사적DX촉진기술개발(R&D)(전사적DX촉진기 술개발)	—	2,100	1,793	7,524
	대·중견·중소디지털협업 공장구축기술개발(R&D)(대·중견·중소디지털협업 공장구축기술개발)	—	5,040	5,346	10,373
	산업디지털전환적합성인 증실증기반구축(산업디지 털전환적합성인증실증기 반구축)	2,000	2,000	2,000	2,000
	철강금속디지털전환(DX) 실증센터구축(철강금속디 지털전환(DX)실증센터구 축)	—	—	2,800	2,240
	No-Code제조기술혁신 생태계구축(No-Code제 조기술혁신생태계구축)	—	—	—	2,250
	산업AI솔루션실증·확산지 원(산업AI실증·확산지원)	—	—	—	12,800
안 제21조(산업 디지 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 성 등)	산업디지털전환확산 지원체계구축(산업 디지털 변화인재(C.A) 양성)	1,500	1,500	—	—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